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환 경청 공고 제86-5호에 의거 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및 취지를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을 공고(86. 7. 30) 하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6년 8월19일까지 의견서를 환경청장(참조: 법무담당관)에 제출하도록 한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본 연합회와 전북환경기사회가 공동으로 건의한 사항을 기재한다.

1. 기본부과금 및 부과금제도

가. 법률안: 배출 부과금에 기본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부과 시점을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로 조정함.

의견: 현재의 행정절차로는 배출업소에 따라서 과중한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현 행정절차를 다음 대책 내용과 같이 병행 실시 조정되었으면 함.

대책안

(1) 개선 명령서 없이 개선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할 것. 이것은 개선내용에 따라 단시일(몇 시간) 또는 장시일에 걸쳐 개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1~3일 내에 개선완료되는 단시일 개선사항에는 현행 행정절차상 배출업소에서 시료 채취일 부터 개선명령을 받기까지는 20여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임.

(2) 현재의 행정절차를 신속화, 간소화 할 것 (배출업소에 결과 통보는 7일 이내로 할 것)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배출업소에서 정상운영 했다 하더라도(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운전중임을 모를 경우) 검체한 결과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1)항의 행정절차 기간 동안 계속 초과 배출하게 되므로 시료 채취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7일 이내 통보토록하고 행정절차는 사후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로 인한 오염물질을 계속 초과 방류토록 해서는 안 될 것임.

(3) 모든 검사는 결과통보 할 것.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기 또는 부정기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배출할 때만 그 결과를 통보 개선토록 하고 있으나 배출허용 기준 이내 배출되는 결과도 배출업소에 통보하여 운영에 대한 참고와 대책을 마련에 세우도록하고 모든 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할 것.

2. 기본부과금 제도

의견 : 오염물질의 극소화 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으면 함.

대책안

(1) 부과금의 일정기간 동안 (예 : 검사통보일 7일분)을 기본 부과금으로 한다.

현행검사 결과 통보일을 7일 이내로 가정하고 기본 부과금을 7일분으로 산정하므로서 오염물질 농도를 개선 기간동안 또는 사전 최소 배출을 유도하기 위함.

(2) 업종별 기본 부과금의 차등 부과 : 업종별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다르므로 일정금의 기본 부과금 종별 등으로 책정될 때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고가인 업종은 낮은 기본 부과금이 될수 있으며 반면 처리비용이 낮은 업종은 높은 기본 부과금이 된다. 업종에 따른 부과금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함.

3. 오염물질 방지시설, 산업폐기물 처리, 자가 측정 대행에 대한 제도

가. 법령안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 또는 측정 대행자, 방지 시설업자,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나 조업정지 또는 영업 정지를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 하도록 함.

의견 : 지방지사 등의 난립과 이로 인한 업소간의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로 또는 부실공사로 인한 성능 등이 발휘되지 않아 환경오염물질 방지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대책안

(1) 지방지사 또는 영업소 지방설계 폐쇄
지방지사 또는 영업소에서 본사에 의뢰하지

않고 면허대여 형식의 지방지사 또는 영업소에서 직접 시공 또는 보완개조 공사 등으로 불량시설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배출업소의 피해는 이중 투자개선 등으로 투자비가 과중하므로 지방지사 또는 영업소에도 일정 규모의 시설, 장비 등을 갖추던가 아니면 폐쇄토록 해야 할 것임.

(2) 방지 시설업 산업폐기물 자가 측정 대행업의 통폐합 또는 허가요건의 강화.

국내 우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허가요건이 완화되므로서 난립되고 이로인한 방지시설 또는 산업폐기물 자가 측정 대행사업이 업소간의 경쟁으로 적정금액 수준 미달로 정상시설, 처리, 대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임.

4. 기타 건의사항

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것

(1) 방지시설 운영자금 또는 투자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 사업자의 부담과 투자, 정상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유도행정을 실시할 것.

(2) 폐수처리 시설설치 업소에 대한 하수세 면제 또는 감면으로 세제상의 행정불신을 해소할 것. (예 :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보다 낮게 배출하고 있기 때문임)

나. 정부공사(종말 처리장)에 따른 배출업소의 투자설비를 사장시키지 말것

다. 전력비의 차등부과

공업용 전력중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한 부문(현재 적산전력계 부착됨)에 대한 전력비를 농사용 등과 같이 공업용과 차등부과 하여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에 의욕을 줄것.